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호외 2022. 1. 13.(목)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86호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전라북도 훈령 제1787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

회람									
----	--	--	--	--	--	--	--	--	--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13일

전라북도 훈령 제1786호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북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실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실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실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제출한 실적가점 심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적가점 부여요건 및 기준에 합당한가를 평가하여 실적 가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u>창안자,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민원봉사대상·청백봉사상 등 수상자, 중앙단위 합동평가 및 기관표창 수상자, 직위 공모에 의한 현안부서 선발자, 도정발전 유공자, 다자녀 출산 공무원로 한다.</u></p> <p>제18조(실적가점 부여) ① (생 략)</p> <p>②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경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계산방법을 준용한다.</p> <p>③ (생 략)</p>	<p>제16조(실적평가위원회의 기능) ----- ----- ----- ----- 하며, 실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서 삭제></p> <p>제18조(실적가점 부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27조제3항 ----- -----.</p> <p>③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월 13일

전라북도 훈령 제1787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 협의 또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단체장”을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으로, “자치단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u></p> <p>제11조(인사교류원칙) ① <u>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u></p> <p>②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u>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 상호 간 인사교류</u>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u></p> <p>제11조(인사교류원칙) ① <u>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 협의 또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u>----- <u>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u>---</p> <p>④ (현행과 같음)</p>

[별표 1]

근무성적 평정자·확인자(제4조 관련)

평정계급	평정대상 소속·직위		평정자	확인자
팀장급 (5급, 연구·지도관)	보좌기관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관	부지사
	본청		관·과장	실·국장
	농업기술원		해당 국장	농업기술원장
	인재개발원		과장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		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소장		본청 소속 실·과장	본청 소속 실·국장
	기타 사업소 (지소는 본소에 포함)		사업소장	본청 소속 실·국장
	경찰위원회		과장	사무국장
6급이하 (연구·지도직 포함)	보좌기관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관	부지사
	본청		관·과장	실·국장
	농업 기술원	행정지원과	과장	농업기술원장
		기타 과 및 소	과·소장	국장
	인재개발원		과장	인재개발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기타 사업소 (지소는 본소에 포함)		사업소장	본청 소속 실·국장
	경찰위원회		과장	사무국장
정원으로서 팀·위원회·타 기관 파견자			원 소속기관 부서의 장	실·국장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